

『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구축되어있는 전시·체험·교육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문화공원을 해제(폐지)하고, 위치·면적·용도지역 등의 변경 없이 현재 상태로 문화시설을 신규 결정하고자,
-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원·녹지계획(변경)

- 1) 문화공원(새마을운동 테마공원) 1개소 해제(폐지)

가)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
나) 면 적 : 0.245km²

나. 사회·문화개발계획(변경)

- 1) 문화시설 1개소 신설

가) 위 치 : 구미시 상모·사곡동 일원

나) 면 적 : 0.247km²

(문화공원 확정측량면적으로 기본계획 상의 면적과 상이)

<공원계획 지표>

구 분	2010년	2015년	2020년			비 고
			기정	증감	변경	
인구(인)	409,792	500,000	550,000	-	550,000	
공원 면적률(%)	2.4	3.7	4.9	-	4.9	
1인당 공원면적(m ²)	36.73	46.11	55.44	감) 0.44	55.00	
공원면적(m ²)	15,049,990	23,052,580	30,493,580	감) 245,697	30,247,883	
합 계(개소)	56	62	69	감) 1	68	
근린공원(개소)	47	52	57	-	57	
수변공원(개소)	6	6	7	-	7	
묘지공원(개소)	1	-	1	-	1	
문화공원(개소)	-	1	1	감) 1	-	• 문화공원해제 (0.245km ²)
체육공원(개소)	2	3	3	-	3	
유원지(개소)	1	1	2	-	2	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」의 건은,
 -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도시계획을 문화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안)으로, 해제되는 문화공원의 면적이 2만㎡ 이상으로 구미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되었으며,
 -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문화시설로 변경되면 새로운 용도의 도입이 가능하고, 경상북도에서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테마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